

의안번호	제587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5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12월 2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7
----------	-----

제출연월일 : 2013. 12.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631호, 2013.6.21.)에 따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을 규정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687호, 2012.3.30.)에 따라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명칭을 변경
(안 제5조)
- 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재 연 4 ~ 6퍼센트 등으로 하던 것을 연 4퍼센트로 인하하여 변경하거나 신설(안 제19조의2, 제37조, 제40조의2, 제62조)
- 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여 신설(안 제34조제4항)
 - 1)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규정

- 마.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4퍼센트로 정하여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을 신설 (안 제62조의2)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안 제20조, 제24조, 제30조, 제36조, 제52조, 제55조, 제58조)
- 사. 지역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정비(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1. ~ 2013. 11. 21.):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

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하는 때”를 “관리위탁할 때”로, “위탁계약”을 “관리위탁계약”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로,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30조제4항제7호 중 “이전하는 때”를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신축하는 때”를 “신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제36조 중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를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로 한다.

제37조의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4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의 제목 “매각”을 “매각 등”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5호 중 “가스렌지”를 “가스레인지”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접세트, 커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인계하는 때”를 “인계할 때”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호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와 같다)중 <u>교육청</u>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p>3. “<u>교육청</u>”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u>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u>을 말한다.</p> <p>4. “제2관서”란 <u>교육청</u>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 <u>지역교육청</u>----- -----.</p> <p>3. “<u>지역교육청</u>”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p> <p>4. ----- <u>지역교육청</u>----- ----- ----- ----- ----- ----- -----.</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책임)</p> <p>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u>교육청</u>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지역교육청</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u>교육청</u>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p> <p>나. <u>교육청</u>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p> <p>다. <u>교육청</u>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p>	<p>제4조(위임사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u>지역교육청</u>----- -----</p> <p>나. <u>지역교육청</u>----- -----</p> <p>다. <u>지역교육청</u>----- ----- ----- -----</p>

현행	개정안
<p>라. <u>교육청</u>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p>	<p>라. <u>지역교육청</u>----- -----</p>
<p>마. <u>교육청</u>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p>마. <u>지역교육청</u>----- -----</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u>교육청</u>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 ----- ----- ----- ----- <u>지</u> <u>역교육청</u>----- ----- -----.</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② ----- -----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육청</u>에 두는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p>	<p>2. <u>지역교육청</u>----- -----</p>

현행	개정안
<p>지원청은 <u>관리국장</u>), 부위원장은 <u>관리과장</u>(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u>재무과장</u>)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본청은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u>교육청</u>은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p> <p>③ ~ ⑦ (생략)</p> <p><u><신설></u></p>	<p>----- <u>행정지원국장</u>-, ----- <u>행정지원과장</u>----- ----- <u>재정지원과장</u>----- ----- ----- ----- -----.</p> <p>3. ----- -----, <u>지역교육청</u>----- -----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u>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u>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u></p>

현행	개정안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u>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u>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u>위탁하는 때에는</u> 법 제27조제2항과 제3항,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u>위탁계약</u>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u>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u>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u>위탁과 동시에</u>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p>	<p><u>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u>사용허가 할 때에는</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 ----- <u>관리위탁할 때</u> ----- ----- ----- ----- <u>관리위탁계약</u>-----.</p> <p>② ----- <u>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u>----- ----- ----- <u>관리위탁</u>----- -----</p>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u>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u>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u>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u>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u>수탁자</u>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u>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입찰에 따라 <u>수탁자</u>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p>	<p>-----.</p> <p>③ ----- <u>관리수탁자</u>-----</p> <p>-----</p> <p>----- <u>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u>-----</p> <p>-----</p> <p>----- <u>관리수탁자</u>-----</p> <p>-----.</p> <p>④ -----</p> <p>----- <u>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u>-----</p> <p>-----</p> <p>-----.</p> <p>⑤ ----- <u>관리수탁자</u>-----</p> <p>-----</p> <p>-----</p> <p>-----</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6. (생략)</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u>이전하는 때</u></p> <p>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u>신축하는 때</u></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 ③ (생략)</p>	<p>④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 <u>이전하는 경우</u></p> <p>8. ----- ----- ----- ----- <u>신축하는 경우</u></p> <p>⑤ ----- ----- ----- ----- ----- <u>해당</u>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 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u>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u></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u>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u></p> <p><u><신 설></u></p>	<p>④ 「<u>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민법</u>」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u>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u>----- -----.</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u>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u></p> <p>② 영 제14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절 매각</p> <p><u><신 설></u></p>	<p><u>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u>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u></p> <p><u>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u></p> <p>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 -----.</p> <p>제2절 매각 등</p> <p><u>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u>가스렌지</u>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p>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p>	<p>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52조(사용책임)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가스레인지</u> ----- ----- -----</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p> <p>1. -----</p>

현행	개정안
<p>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u>에어콘</u>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p> <p>2. (생략)</p> <p>3. <u>응접세트, 커튼</u>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u>인계하는 때에는</u>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u>영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p> <p><u>에어콘</u> -----</p> <p>-----</p> <p>2. (현행과 같음)</p> <p>3. <u>응접세트, 커튼</u> -----</p> <p>-----</p> <p>-----</p> <p>-----</p> <p>-----</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인계할 때</u>-----</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u>영제81호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u></p>

현행	개정안
<p>1. 삭제</p> <p>2. <u>100만원 초과: 1년 4회 분납</u></p> <p>3. <u>200만원 초과: 2년 분납</u></p> <p>4. <u>300만원 초과: 3년 분납</u></p> <p>② (생략)</p> <p><신설></p>	<p><u>호와 같다.</u></p> <p>1. <u>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u></p> <p>2. <u>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u></p> <p>3. <u>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u> <u>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u></p>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u>이 되며, 위원은 그 소</p>	<p>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교육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u></p>

현 행	개 정 안
<p>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u>관리과</u> 총무담당 이 된다.</p> <p>④ ~ ⑥ (생략)</p>	<p><u>원국장</u>)----- ----- ----- <u>행정지원과</u> ----- ----- ④ ~ ⑥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u>학무국장</u> 또는 <u>교육과장</u>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교육지원국장</u> ----- ----- <u>교육지원과장</u>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6.] [법률 제11724호, 2013.4.5.]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3.1.1.] [충청북도조례 제3524호, 2012.12.28.]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5.12.23>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7.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58호, 2013.6.28.]

제21조(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 ① 지역교육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0.8.27, 2012.12.28>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8>

제2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2.12.28>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3과 2센터 지역교육청) 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평생체육건강과·특수방과후지원센터·학생학부모지원

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2.28, 2010.8.27, 2012.12.28>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7, 2012.12.28>

제24조의2(2과 2센터 지역교육청) 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특수방과후지원센터·학생학부모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의3(2과 1센터 지역교육청)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맞춤형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맞춤형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6.21.][대통령령 제24631호, 2013.6.21.]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제14조(사용료)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와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 ④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 ④ (생략)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부칙 <제24631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

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대부료 산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제2항·제3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3.21>

1. (생략)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3.30.][대통령령 제23687호, 2012.3.30.]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